

2.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동 조례는 영농지원 및 재해대책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의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농업인 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기계류의 사용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에 의해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(안제6조)
- 기계류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 경과시 연체료 부과제도를 모두 폐지(안제7조)
- 천제지변에 대비한 우선 대여 기준 신설(안제9조)

□ 검토의견

-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, 트랙터, 동력살분무기, 콤바인, 이앙기, 바인더 등 농기계류에 대한 관리를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제도와 사용료 및 연체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천제지변에 대비한 우선 대여 기준을 신설하여 농민 편의제공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
- 고가품의 농기계에 대한 무료 이용으로 자칫 손괴, 망실 등의 우려가 있어 기계류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임.